

2019년도
청년 지식공동체 '청년담론'
연구 세미나 상반기 포럼

일시: 2019년 2월 16일(토) 16~18시
장소: 성공회대 새천년관 7417호

국가보안법으로 보는 국가권력이 내부의 적을 다루는 방식

국가보안법 연구 세미나
김창인

<목차>

1. 서론: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국가보안법의 내용
4. 국가보안법 피해자
5. 국가보안법 비판
6. 결론: 국가보안법과 분단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에 기댄 국가권력
7. 참고문헌

1. 서론 :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죄장기수는 한국에 있다. 2000년 복으로 송환된 김선명 선생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무려 45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의 복역 기간이 27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보안법의 위력이 어느 정도 인지는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자랑스럽지 않은 기록은 이뿐만이 아니다. 1994년 9명의 공동교수가 집필한 '한국사회의 이해'는 1만여 명이 수강을 마친 경상대학의 강 의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해 저자들이 구속되었다. 1995년에는 한 비 전향장기수의 장례식을 주도했던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기관은 이 비전 향장기수의 무덤을 유족들의 허락도 없이 파헤쳐 주검을 이장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의 수사 대상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는다.

2019년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2017년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이들은 42명에 달하며, 이 중 7명이 구속되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이라고 보기 어려 우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로 인한 피해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위 험성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복역기간을 마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보안관찰법,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조치 등과 연장선상에 있 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 인물들 또한 감시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 되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를 감시사회로 기능하게 한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탄 생했고, 어떤 역사 속에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루었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 전반에서 국 가권력이 기능하고 있는 방식을 고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오늘 발제는 국가보안법의 피해

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한 기록과 함께 국가권력이 내부의 적을 어떻게 만들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시초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1925)'이다. '치안유지법'은 일제 통치하에 조선인 항일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령이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 이외에도 '집회 취제에 관한 건(1910)', '경찰범처벌규칙(1910)',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조선 임시보안령(1941)' 등으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억압적 정책을 펴왔다. 이 모든 법령들은 오늘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안관찰법', '반국가행위자 처벌 특별조치법'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변모하였다.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의 비교>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1조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조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2조,3조 전조 1항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3조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을 합의를 맺고 또는 선전한 자는...
5조 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원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입 또는 약속을 행한자는...	4조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방조한 자는...
6조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5조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조 본법은 하인을 불문하고 본법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	8조 본장의 규정은 누구든지 본법 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49년 개정으로 추가됨. 해외에서 일어난 일도 처벌하는 규정)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이토록 치안유지법과 닮아있는 이유는 급조한 법령이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이승만 세력은 4.3 제주항쟁과 여순항쟁 등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에 위협을 느꼈다. 이에 1948년 이승만 정부는 내란상태를 명분으로 내세워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제정은 대한민국 형법 제정(1953년 9월 18일)보다 몇 년이나 앞서 이루어졌는데, 이승만 정부가 단정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것에 얼마나 큰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을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규정했고,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남한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야기했다. 오죽하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경함" 中>1)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여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에게 경고코자 한다. 국제정세가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질 것을 생각할 때...

국가보안법의 파괴력은 대단했다. 국가보안법 출범과 동시에 132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체시켰다. 또한 시행 첫해 동안 11만 명을 구속시켰는데 이는 당시 20세 이상 남한 인구의 1.5%에 달하는 수치였으며, 전국 18개 형무소 수감자의 80%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었다.

국가보안법이 형법으로 흡수되어 폐지될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허정 과도정부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개악하였다.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구성죄, 살인·방화·운수·통신기관 등 기타 중요시설 파괴목적의 결사나 집단구성죄 두 가지 명목만 존재했던 초기의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불고지죄를 추가 신설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7월 반공법을 추가로 신설했고, 전두환 정부는 1980년 12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단일화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91년 5월 이를 부분 개정하여 현재의 25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3. 국가보안법의 내용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장은 총칙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다. 제 2장은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3조부터 10조까지는 국가보안법 상의 핵심적인 범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11조에서 17조까지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범죄와 형벌을 적었다. 제 3장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구속기간의 차별적인 연장근거 등을 규정하였고, 제 4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체포에 협조한 자에 대한 포상과 원호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할 시 최대 포상금은 무려 20억원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은 크게 8가지 죄목을 두고 있는데, 1.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 2.목적수행죄, 3.자진지원, 금품수수죄, 4.잠입, 탈출죄, 5.찬양고무죄, 6.회합, 통신죄, 7.편의제공죄, 8.불고지죄가 그것이다.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1)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제3조)

1) 최창동(1995),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1991.5.31>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그러나 195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느 종교단체가 피안의 세계인 어떠한 국가를 내세우는 등의 현실적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는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참칭'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실질적 요건을 결여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는 오로지 '북한'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반국가단체구성죄는 형법 제 40조 내란죄,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도 해당되어서 사실상 필요가 없는 법이다. 또한 여기서 국가변란이 뜻하는 것이 지도자의 교체인지, 새로운 정부의 구상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은 더욱 큰 문제이다.

2) 목적수행죄(제4조)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지령받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위 조문에서 형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가있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목적수행죄가 뜻하는 죄목은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간첩죄 또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대해 공안은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동을 처벌하는 법인데, 북한을 적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북한을 준적국이라고 규정한 판례가 있다.

제4조 6호는 선전선동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인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3) 찬양고무죄(제7조)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찬양고무죄는 가장 많이 악용되는 국가보안법의 조문이다. 여기에는 '기타의'라는 애매모호한 용어가 쓰여 있는데, '기타의'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 전체에서 총 9번이나 거론된다.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조문이다. 평양냉면에 대한 칭찬 또한 공안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찬양고무죄가 그 내용상으로 위헌이지만 해석적용만 잘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한정합헌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찬양고무죄는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위헌이나 다름없다고 인정할 정도의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이다.

4) 불고지죄(제10조)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불고지죄는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자체로도 전근대적인 조항이라 할만하다.

⑤ 특별 형사소송 절차(제18조~제20조)

<p>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p> <p>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p> <p>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p> <p>제20조(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p> <p>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p>

특별 형사소송절차 제도는 일반 형사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는 법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강제구인제도와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이유없이 2번 거절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조항 등 헌법의 평등원칙(제11조)을 위배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구속 기간의 차별적 연장도 가능하게 해놓았다. 사상전향 강요를 위한 공소보류제도(제20조) 또한 포함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4.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년담론의 국가보안법 세미나팀은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예술가인 이시우 작가, 비전향 장기수 김교영 선생,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강정구 교수, 가장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되었던 사업가 김호씨 등이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곧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 기록 중 2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권력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내부의 적을 다루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례1> 비전향장기수 김교영 선생

김교영 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1953년 북에서 정치위원으로 파견되어 경남으로 내려왔다. 휴전 이후엔 고립된 빨치산들과 함께 지리산에서 활동을 했다. 300명 규모의 부대에서 사단장으로

로서 정치교양을 전담하던 지식인이었다. 그는 1954년 1월 국군5사단 수색대에 체포되었는데, 그가 속해있던 부대에서 그 말고는 대부분 전사했다고 한다. 체포 직후엔 남원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모진 고문과 사상전향강요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중 1954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1961년 가석방으로 출감되었다. 출소 이후 가정을 꾸리고 임용노무자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1981년 사회안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과 공안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회안전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었다. 두 번째 출소 이후 현재는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북으로 송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단절된 남북교류 때문에 북으로의 송환 여부는 미지수다. 김교영 선생은 자택에 자신이 빨치산에서 활동했던 기록들을 자필로 남겨 보관 중이다. 300여명의 동료들의 이름과 성격, 취미 등이 모두 적혀있다. 자신이 아니면, 역사가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대한 죄책감과 부채의식 때문이다.

사례2> 강정구 교수

강정구 교수는 동국대에서 사회학과 교수 재직하던 중 2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첫 번째는 만경대 필화사건이다. 만경대는 해방 이후 항일운동가의 자손들이 고아가 되어 거처도 없이 노숙하며 지내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북측 정부가 설립한 일종의 고아원 겸 학교이다. 북한은 만경대에서 최고 대우의 엘리트 교육을 진행했으며, 명절 때마다 김일성 주석이 방문하였고 부모가 없는 만경대의 학생들이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이 현재 북측의 아버지 수령 호칭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 고위관료들 대다수가 만경대 출신의 인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2001년 강정구 교수는 북한에서 열린 합법적인(남한 기준의) 학술교류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만경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에 강정구 교수는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왔는데, 귀국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강교수의 만경대 정신은 국가가 사회의 약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공안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옥고는 2005년 한국전쟁을 6.25통일내전이라고 지칭한 행동 때문이었다. 남과 북이 모두 통일을 목적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니 통일전쟁이라고 규정해야 마땅하다는 지식인으로서의 학술적 견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규정되었다.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마저도 국가보안법은 허용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 사건에 대한 법정 진술 중 일부이다.

변호사 : “혹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너무 비판적인데 치우쳐, 학문으로서의 객관성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강정구 교수 : “저는 저의 학문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학문연구 결과가 객관성이 약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학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 연구분야가 현대사, 통일, 북한이고 이 분야의 연구주제는 대부분 냉전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되었기에 이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치 학문이 아닌 것 같고 객관성이 덜한 것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본보기가 한국전쟁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저의 학문연구 결과가 마치 객관성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적 좌표인 민족, 민중, 비판 학문에 충실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²⁾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한국전쟁 이후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이들부터, 학술지식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이들까지 광범위하게 억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끊임 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과 자기검열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은 국가보안법의 파괴력이 단순히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양심과 사상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5. 국가보안법 비판

1)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논리의 모순성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문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만의 온전한 정통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유엔 총회 결의문의 실상은 남한 단독선거의 효력이 남한에만 국한된다는 의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국제사회는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북한 또한 국가로서 정당하게 인정했다. 게다가 남북 당사국 간에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서로를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1990년 8월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 2조에 따르면 북을 '북한'이라고 규정한다.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하면 북한은 이미 법적으로도 반국가단체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며, 더 나아가 헌법상 평화통일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부정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현대 인권법의 대전제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법이어야 하고, 관습에 의해서는 안되며, 비록 성문의 법률에 의한다 해도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둘 수 없으며,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확대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사건에 형벌을 부과하는 법규정은 상대적인 형벌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단순히 도둑질 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처벌대상인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죄성립요건을 특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갖기가 어렵다. 즉, 현대법은 타당성, 실효성, 실현가능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유추와 확대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즉,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3)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국가로서 지위

2) 강정구(2018) 「탈냉전 평화통일시대와 국보법」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함유한 권리를 가진다.

-UN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국제연합총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2항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사상과 양심이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반인권적 법률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는 형법 등 다른 형벌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의 공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흡한 부분이 생긴다면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학계의 토설은 이 조항에서 양심의 의미는 윤리적 의미의 양심만이 아니라 널리 사상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더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는 명시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부정

엄밀히 말할 때 ‘양심’이 윤리적 자원의 사고라면 ‘사상’은 세계관적 확신과 관련된 논리적 차원의 사고라고 구분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법 해석으로 헌법 제19조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조문이라고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최상급기본권”이라고 언급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 역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의 외피를 쓴 ‘불법국가’가 등장했을 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단초는 시민의 양심과 사상적 결단에서 비롯한다.

철학자 밀은 자유론에서 사상의 자유가 필요한 근거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어떤 사상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 어쩌면 그 사상이 진리일지 모른다. 둘째, 설사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통상 진리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진리라고 널리 인정되는 사상의 경우도 그것에 대해 진지하고 활발하게 논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치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생각해 그 사상의 합리적 근거를 이해하고 실감하기 어렵게 된다. 넷째,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교설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약화되어 그 사상 이 사람의 인격과 행위에 미

치는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다 등이다.

이처럼 자유주의의 기본은 사상의 자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러한 사상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권’의 핵심으로 ‘경제적 기본권’보다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정신적 자유의 우월론) 따라서 국가의 존립이나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사상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도 ①그 규제법령의 합헌성은 경제적 기본권을 규제하는 법령의 합헌성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합헌성 추정 배제의 원칙’), ②그 법령이 막연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무효이며(‘명확성의 원칙’, 또는 ‘막연하므로 무효의 이론’), ③사상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제약할 경우에는 해악 발생의 확실성과 제한의 절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6. 결론: 국가보안법과 분단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에 기댄 국가권력

1) 국가보안법과 분단이데올로기

흔히 한국이 실상은 섬나라라는 이야기를 종종하곤 한다. 우리는 보통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외국을 ‘해외’라고 부르는 것은 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한국은 섬나라가 아니지만, 외국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륙과 연결된 반도 국가라고 해도, 섬나라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국에선 한반도의 위쪽을 갈 수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는 실체화된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북한과 적대관계다. 일부 법률상으로는 아예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리적 단절은 대륙과 이어진 반도 국가로서 모든 이점을 포기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무역을 하려해도, 문화적 교류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바다를 건너야 세계와 만날 수 있다. 이는 한반도가 통일국가였다면 있지 않았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한계들이다. 그러나 이 ‘넘을 수 없는 선’은 물리적 한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휴전선이라는 물리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한계들이 모든 한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한히 증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악법이다. 북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역사 속에서 정권에 반하는 인사들을 처벌하고 탄압하는 도구였다. 당연하지만 법은 해당 법에 접촉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유효한 범위는 국가 전체이며, 모든 국민이 법에 접촉될 여지와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사고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 사상을 검증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구상의 다른 국민들은 고려하지 않는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사회는 애초에 사고의 폭이 한정된다.

2013년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과 내란음모죄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사상과 이념을 근거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법원이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을 밝혀 내지도 못했고 간첩도 아니라는 것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당시 분위기는 모두가 통합진보당 전체를 마치 간첩집단인 것처럼 여겼다. 한국형 메카시즘의 광풍이었다. 이는 분단이 지속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공안사건의 조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1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은 간첩 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에 기소되었다. 지금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처럼 모두 조작된 사건이다. 유우성은 탈북자 출신으로 국정원의 감시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국정원은 뜬금없이 유우성의 여동생인 유가려를 영장도 없이 체포했고 6개월 동안 감금 및 폭행하며 오

빠인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었다. 유우성은 꼼짝없이 간첩으로 내몰려 재판에 받아야 했다. 재판 현장에서 남매가 울면서 진술하는 장면은 눈물없이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는 분명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왜 도대체 간첩 조작을 군부독재도 아닌 지금, 21세기에 하하는 것일까?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통해 체제가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북에 대한 적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외부적으론 외교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내부에서는 외부의 적을 근거로 구성원을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활과 일상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물론이고, 생각과 사고에 대한 통제도 포함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체제다',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를 위협하는 내부의 괴멸로 이어진다' 등의 생각을 전체 국민들에게 심어내는 것이다. 바로 '분단 이데올로기'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세력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조작사건을 만들며 위기를 조성하고, 분단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우리는 이에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에 벗어나려는 노력은 전체 국가의 적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탈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건, 자유민으로 살아갈 기회의 박탈이다. 한반도가 반쪽이듯, 반쪽짜리 자유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2) 국가권력과 분단체제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정의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의를 개인이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라는 전 인류적 실험의 결과다.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개인의 의사로 판단하지 않고 국가라는 사회공동체를 통해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다. 그리고 이 책무는 현실에서 국가의 공권력으로 발현된다. 그래서 법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과도하게 도출해보면 공권력이 향하는 방향성이 바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이다.

국가 공권력의 방향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될까? 공무원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할테니 국민들이 투표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이념인 헌법이 정해주는 것일까? 세상이 그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는 제한적 조건과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유력한 제한적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분단이다. 이를 김동춘 교수는 저작 <전쟁 정치>에서 '정치화된 정의', '굴절화된 정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쉽게 말해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정치적 맥락과 연관되며, 그 이해관계에 따라 굴절되었다는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는 분단상황에서 북을 적대하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국익으로 규정되며, 이 국익에 의해 다른 권리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 또한 정의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분단이 남한 자체의 내부동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북한도 남한 없이 존재 근거가 없다. 서로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단은 극복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장기간 유지 시키며 국가시스템을 만들어가다보니 '병영국가', '안보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을 뿌리로 가지게 된 것이다. 분단체제는 스스로 자기 재생산이 가능하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유연하게 그 걸모습만 변할 뿐이지, 전쟁과 안보를 들먹이는 근본원리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분단체제는 국제정세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분단은 남과 북 그 누구의 의도도 아니었다. 이는 해방 이후 미소갈등과 자본주의-사회주의 진영 간 대립의 산물이며,

현재는 미국 중심 세계 패권 질서의 하위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즉, 분단은 한반도에 똑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유지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공권력의 방향을 정하는 조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이데올로기, 미국 중심 세계 질서의 산물, 이 세 가지만 봐도 우리는 분단이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주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주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한국사회의 권력은 다층적으로 분포해있다. 그러나 이들 중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가 국가권력임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 국가권력의 한 축이 분단체제에 기대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권력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방식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권력이 내부의 적을 만들면서 한국사회를 억압적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다.

7. 참고문헌

김동춘(2013), 『전쟁정치』, 길.

최창동(1995),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주권 · 규율 · 생명 : 푸코 권력이론의 3중주

푸코 연구 세미나
정경직

<목차>

1. 서론: 연장통으로서의 푸코
2. 『정신의학의 권력』: 주권권력과 규율권력의 대비
 - 1) 주권권력
 - 2) 규율권력
 - 3) 권력의 효과로서의 개인
3. 『비정상인들』: 모든 규율의 잔재, 규율에 동화불가능한 자
4.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생명 권력의 탄생
 - 1) 생명권력
 - 2) 인종주의: 죽이는 권력을 작동시키기
 - 3) 나치와 사회주의 그리고 근대국가: 주권, 규율, 생명 권력의 절합.
5. 권력 이론의 활용
 - 1) 법체계 · 규율메커니즘 · 안전장치
 - 2) 질병에 대한 대책
 - 3) 권력 메커니즘의 3중주
6. 결론: 위력이란 무엇인가?
7. 참고문헌

1. 서론: 연장통으로서의 푸코

많은 연구자들은 푸코의 사유를 접할 때, ‘공백’ 내지 ‘단절’이라는 문제와 마주했다. 『성의역사 제 1권』이 1976년에 출판되고, 『성의역사 제 2권』과 『성의역사 제 3권』이 1984년에 출간되기까지 8년여 시간 동안 다른 책을 출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푸코의 권력이론 세미나>는 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의 푸코의 사유를 추적할 수 있는 <콜레주 드 프랑스 강연록>을 읽어왔다. 지금까지 세미나에서는 『정신의학의 권력』, 『비정상인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를 읽었고, 이 발표는 그동안 우리가 세미나에서 공부한 것에 대한 정리이자 활용이

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 사유의 일관성,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에 큰 관심을 쏟지만, 푸코는 스스로의 사유와 관심을 확장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쏟았던 것 같다. 나는 푸코를 엄청난 속도로 치열하게 사유했던 연구자로 대한다. 그는 생전에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자기 사유의 범위를 확장시켜나갔다. 물론 이는 단순한 ‘확장’의 과정은 아니다.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푸코는 자신의 박사논문인 『광기의 역사』를 철저히 비판하며 다른 사유의 지평으로 접어든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콜레주 드 프랑스> 강연록에서도 계속된다.

푸코는 강연을 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개념들을 수정하고 이론을 뜯어 고치고, 과거의 작업을 재활용한다. 때문에 그의 작업은 연속되지만 동시에 단절되고, 공백이 있어 보이면서도 이전의 작업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푸코의 텍스트들을 읽을 때 우리는 한 모범적인 연구자의 치열한 지적여정을 따라가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 발표를 통해 제안하는 것은 푸코에게서 ‘완성된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이자 용기를 배우자는 것이다. 푸코는 스스로의 사유가 완결되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그의 흔적들을 연장통으로 삼아, 우리는 푸코처럼 계속해서 사유해야 한다. 이 발표는 그 시도 중 하나이다.

2. 『정신의학의 권력』: 주권권력과 규율권력의 대비

권력은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로부터 발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산, 중계, 망, 상호지지, 잠재력의 차이, 격차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권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기능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차이들의 체계 내에서의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³⁾

주권권력이 그것을 진 개인의 현란한 힘의 상징을 통해 현시되는 반면, 규율권력은 은밀하고 분산된 어떤 권력입니다. 규율권력은 망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이며, 침묵 속에서 이 권력을 행사당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순종성과 복종성 내에서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권력입니다. 이 무대에서 본질적인 것은 한 규율권력에 대한 한 주권권력의 대립과 복종, 그리고 결합[유기적 결합]입니다.⁴⁾

1) 주권권력

푸코는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주권권력과 규율권력을 대비시켜 설명한다. 푸코에 따르면 주권권력이란 ①징발과 지출로 이루어진 체계이다. 이 체계에서는 언제나 징발이 지출을 크게 웃도는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 비대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권적 관계의 배후, 그리고 징발과 지출 간의 이런 비대칭적 결합의 배후에는 파괴·약탈·전쟁 등이 존재한다.

②주권적 관계는 토대가 되는 표식을 지닌다. 주권적 관계는 항상 예식, 의식 같은 것들(예컨대 몸짓, 상징, 복식, 경례의 의무, 존경을 표시하는 상징, 휘장, 문장 등)을 통해서 재현동화된다. 주권적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복이나 재현동화 의례 외에도, 의례적인 표식의 작용 외에도, 항상 일정한 부가적 폭력 또는 일정한 폭력적 위협이 필요하다. 주권권력은 예식과 상징으로 이뤄진 불연속적이고 의례적이며 다소간 주기적인 작용을 필요로 한다.

3) 푸코, 미셸(2014), 『정신의학의 권력』, 오르트망, 난장, p. 22.

4) 푸코, 미셸, 『정신의학의 권력』, p. 47.

③주권적 관계는 동위체적 관계들이 아니다. 즉 끊임없는 차별화 관계이다. 이 관계들에는 공통의 척도가 없고 서로 이질적이다. 예컨대 농노와 영주 사이에 발견되는 주권적 관계, 가신과 주군의 관계,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 등이 있다. 주권권력의 경우 자리바꿈은 단절 내에서 이뤄진다. 이 모든 관계를 단일한 체계 내부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규율권력

푸코에 따르면 규율권력은 징발-지출 메커니즘, 즉 징발과 지출의 비대칭적 결합을 작동시키지 않는다. ①규율장치에는 이원성이나 비대칭성이 없다. 규율권력은 개인의 활동을 징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을 총체적으로 포획하고자 한다. 규율체계는 개인의 신체, 생명, 시간을 점유를 지향한다.

②규율체계는 그것이 기능하기 위해 연속적인 통제의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규율체계 내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 누군가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된다. 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을 통해 보증되고, <문서기록>이라는 도구를 통해 항구적인 가시성을 확보한다. 주권권력은 폭력적이고 간헐적으로만, 전쟁과 본보기적인 처벌, 예식의 형태로만 개입하지만, 규율권력은 최초의 순간, 최초의 몸짓, 최초의 미동부터 이미 부단히 개입한다.

③규율장치는 동위체적이다. 예컨대 군대의 기수, 학교의 학년과 같은 것 말이다. 이런 체계에서는 분쟁, 전쟁, 특혜 등을 통해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자리바꿈이 이뤄질 수 없다. 자리바꿈은 시험, 선발시험, 근속연수 등과 같은 규칙화된 운동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다양한 규율장치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장치의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의 이행이 항상 이뤄질 수 있다.

동시에 모든 규율권력에는 여백이 존재한다. 정신병자, 비행자 등이 이런 사례이다. 푸코는 정신병자가 잔재 중에 잔재, 학교, 군대, 경찰 등 모든 규율에 동화불가능한 자라고 말한다.

3) 권력의 효과로서의 개인

푸코가 보기에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권력이 신체의 단일성 위에 고정된 결과일 뿐이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 권력 이전의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푸코는 개인의 타고난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오류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애초부터 이 메커니즘들의 작용으로 정상적인 주체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간이라 불렀던 것은 법률적 개인주의와 규율적 개인주의의 협공의 결과이고, 여기서 나온 잔상에 불과하다. 법률적 개인은 그것을 통해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담론 내에서 권력을 요구한 개인이고, 규율적 개인은 이 동일한 부르주아지가 생산력과 정치력의 장에서 개인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테크놀로지의 결과물이다. 즉 주장되는 권력과 행사되는 권력 간의 동요로부터 보편적 인간이라 불리는 환상과 현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3. 『비정상인들』: 모든 규율의 잔재, 규율에 동화불가능한 자

푸코는 비정상인들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광기가 실은 '문명의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비정상인들은 규율을 거부하는 자, 규율권력의 잔재이다. 푸코는 『비정상인들』에서 괴물, 교정불능자, 자위행위 하는 어린아이라는 세 인물형을 다루고자 한다.

괴물은 사법적이고, 생물학적인 영역이 중첩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괴물은 인간의 본성, 동물성과 관련된다. 괴물은 그 자체로 이해 불가능하다는 속성을 갖는다. 때문에 괴물은 법적-합리성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괴물은 법을 위반하고, 넘어서며, 초월하는 자이다. 괴물은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법 외적인 폭력이나 그저 단순히 제거하려는 의지를 마주한다.

교정 불가능한 개인은 모든 규율에 저항하고, 모든 주체화를 거부하는 자로 정신병리학에 의해 해석되는 이다. 괴물이 예외적이라면 교정 대상은 일상적이다. 교정 대상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정의 기술·과정·투입이 실패했을 때 정의된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교정 불가능한 사람은 그가 교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적인 교정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교정의 기술을 불러들인다.

자위행위 하는 어린아이는 보편적이다. 자위행위는 일반적인 비밀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비밀이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다. 그런데 18세기의 의사들은 모든 육체적·신경적·심리적 질병의 원인을 자위행위에서 찾는 성적 병인론을 작동시킨다. 자위행위는 문제적 행위가 된다. 또한 어린아이는 제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미성숙한 대상이다. 정신의학은 이제 섹슈얼리티에 개입한다.

정신의학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비정상인들'로 규정하면서 사회에서 일반화된다. 법을 초월하는 위험한 이를 해석하고, 모든 규율을 거부하는 이를 교정하려하며, 미성숙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정신의학은 사회 전반에, 법과 행정, 교육과 가정의 영역에 슬그머니 들어온다. 세 종류의 인간형들은 교차·중첩·절합 된다.

정신의학은 비정상을 의학화 하면서, 위험한 비정상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정신의학은 이제 더 이상 병을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의학은 보호와 질서의 기능을 맡고자한다. 정신의학은 사회 전체를 수호하는 역할과 동시에, 유전개념에 의해 가정의 섹슈얼리티에 간섭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4.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생명 권력의 탄생

1) 생명권력

푸코는 19세기의 근본적인 현상으로 권력에 의한 생명중시를 언급한다. 기존의 주권 권력은 '생살여탈권'으로 주권자가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력이다. 이러한 생살여탈권은 생명에 관심을 갖는 권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죽이는 권리이다. 따라서 생살여탈권은 불균형적 방식으로만, 언제나 죽음에 편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칼의 권리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대대적 변화가 생긴다.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가 새로운 다른 권리에 의해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되었다. 이 새로운 권리는 최초의 권리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권리에 침투하며, 최초의 권리를 가로지르고 수정해, 오히려 정반대의 권리가 되었다. 즉,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 된 것이다.

이 [생명]권력은 17~18세기에 본질적으로 신체에, 개별 신체에 집중하는 규율 권력의 기술과는 다른 것이다. 규율권력의 기술은 신체들을 분리, 정렬, 계열화, 감시하며, 개별 신체를 공간적으로 배분하고, 가시화한다. 동시에 규율 권력은 연습, 훈련, 훈육에 의해 신체의 유용한 힘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규율권력은 감시·위계·시찰·기록·관계의 모든 체계에 의해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권력의 합리화와 경제의 기술이다.

생명권력의 기술은 규율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기술을 끼워 넣고, 통합하며, 부분적으로 변경한다. 이 생명기술은 규율기술과는 다른 수준에, 다른 차원에 속하며, 적용범위가 다르고 완전히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 생명권력의 기술은 신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겨냥한다. 즉 인간-신체가 아니라 인간-종을 겨냥한다. 인간 신체의 해부-정치가 아니라 인간 '종에 대한 생명정치'가 등장한 것이다. 생명권력은 탄생과 사망의 비율, 출산율, 인구의 번식력, 평균수명, 자살율 등과 같은 삶의 과정 전체가 문제시 된다.

정리하면 생명정치는 '인구'에 관여한다. 생명정치가 관여하는 현상은 집단의 수준에서만 정치적·경제적 효과가 등장하고 또 적실성을 갖게 되는 집단적 현상이다. 이 현상은 개별적으로 다뤄보면 우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지만, 집단적 수준에서는 그 상수를 쉽게 제시할 수 있고, 수립 가능한 현상이다. 예컨대 한 개인의 자살은 우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지만, 자살률은 각 국가·사회별로 파악되고, 손쉽게 상수로서 제시된다. OECD 자살률 1위와 같은..

생명정치의 메커니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따라서 예측, 통계적 추산, 포괄적 조치이다. 생명정치의 목표는 개별적인 현상이나 한 개인으로서의 개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이나 전반적인 현상들의 수준에서 개입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예컨대 자살률이나 발병률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출생률을 자극해야만 하는 것이다.

생명정치는 살아 있는 존재로 이뤄진 인구의 주변에 존재하는 우발성의 주변에 안전메커니즘을 설치하고, 균형을 정하고, 평균치를 유지시키며, 일종의 항상성을 확립시키고, 보상을 보증할 수 있는 조절메커니즘을 확립한다. 권력은 점점 더 죽게 만드는 권리가 아니게 되고, 점점 더 살게 만들기 위해 사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개입하는 권리가 된다.

두 개의 계열이 있다. 신체-유기체-제도들의 계열, 그리고 인구-생물학적 과정-조절메커니즘-국가의 계열. 그러나 제도와 국가 사이의 이런 대립, 규율권력과 생명권력간의 대립은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경찰 같은 규율기구인 동시에 국가기구이기도 한 몇몇 기구에서 규율은 손쉽게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규율적인 것과 조절적인 것의 두 가지 메커니즘이 다른 수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둘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절합 될 수 있다.

규율과 조절 양 쪽에 속하는 사례가 있다. 섹슈얼리티가 그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신체와 인구가 교차하는 곳에 있다. 섹슈얼리티는 신체적 행위로서, 규율적 통제에 속하지만 동시에 인구가 구성하는 생물학적 과정에도 속한다.

푸코는 이렇게 규율적인 것과 조절적인 것이 순환하는 요소를 '규범'이라고 언급했다. 규범화

사회란 규율적 제도들이 증식되어 마침내 모든 공간을 모조리 뒤덮어버린 일종의 일반화된 규율적 사회가 아니다. 규범화 사회란 규율의 규범과 조절의 규범이 서로 절합되고 교차된 사회이다.

2) 인종주의: 죽이는 권력을 작동시키기

주권권력은 점점 더 뒷걸음치고 있는데 반해, 규율적이거나 조절적인 생명권력은 점점 더 전진하고 있다면, 죽이는 권리와 살해의 기능은 어떻게 행사될 수 있을까? 푸코는 여기에 인종주의가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인종주의는 권력이 떠맡은 생명의 영역에 어떤 절단을 도입하는 수단이다. 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를 나누는 절단, 즉 인구의 내부에서 집단들을 서로 갈라놓는 방식이다. 권력은 인간-종을 다루는데, 인종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종을 인종이라는 하위집단으로 세분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인종주의는 나의 생명과 타인의 죽음 사이에서 대결이라는 군사적이고 전쟁적인 관계(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가 아니라 생물학적 유형의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열등한 종이 사라질수록, 비정상적인 개인들이 제거될수록, 종을 퇴화시키는 것이 줄어들수록, 나, 즉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나는 더 살 것이며, 더 강해질 것이고, 더 활기차게 될 것이며, 더 번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타인의 죽음, 불량한 종의 죽음, 열등한 종 또는 퇴화된 자나 비정상적인 자의 죽음, 이것은 생명 일반을 더 건강하게 해주며, 더 건강하고 더 순수하게 해줄 것이라는 관계다. 이는 말살해야 할 적이 정치적 의미에서 적수가 아니라, 인구와 관련해, 인구에 대해 외적이거나 내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는 죽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다. 따라서 생명권력의 양식을 따라 기능하는 근대 사회에서 왜 인종주의가 발전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살해 기능은 죽음에 노출시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의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것, 혹은 아주 단순하게 정치적인 죽음, 추방, 배척 등일 수 있다.

3) 나치와 사회주의 그리고 근대국가: 주권, 규율, 생명 권력의 절합.

푸코는 이를 나치즘에 대한 분석과 소비에트에 대한 분석에도 연결시킨다. 나치정권은 규율적이고, 조절적이다. 규율권력과 생명권력, 이 모든 것이 나치 사회의 구석구석을 가로질렀다. 생물학적인 것, 번식, 유전 등의 관장·질병, 사고의 관장 등. 나치가 수립한 사회만큼 규율적이고 보험적인 사회는 없었다. 생물학적 과정에 고유한 우연을 통제하는 것은 이 체제가 즉각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 중 하나다.

동시에 나치 사회는 죽이는 주권 권력을 일반화한 사회이기도 하다. 나치 국가는 생물학적으로 정비하고 보호하고 보증하고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장과 이와 동시에 누군가를, 타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주권적 권리를 절대적으로 공존하게 만든다. 죽이는 주권적 권리와 생명권력의 메커니즘 사이의 작용을 그 절정으로 밀고 나간 것은 오직 나치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작용은 실제로는 모든 국가의 기능 속에 기입되어 있다. (푸코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푸코는 이러한 인종주의를 경유한 주권 권력, 죽이는 권력이 사회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조건들의 변혁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변혁·이행의 원리라고 강조할 때, 경제적 과정의 수준에서 변혁의 원리를 모색했을 때, 사회주의는 적어도 즉각적으로 인종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사회주의가 투쟁, 적에 맞선 투쟁,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의 적수 제거 같은 문제에 관해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든 순간마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의 적수와 물리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인종주의는 재부상한다. 왜냐하면 생명권력의 주제들과 밀접히 연결됐던 사회주의적 사상에 있어서 인종주의는 적수를 죽일 이유를 사유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적수를 경제적으로 제거하고 이들의 특권을 잃게 만드는 것만이 문제라면, 인종주의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수와 일대일로 맞서는 것을 생각하자마자, 그리고 적수와 물리적으로 싸워야 하고 자기네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며 적수의 죽임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자마자, 인종주의가 필요해진다.

푸코는 인종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어떻게 생명권력을 기능시키고, 이와 동시에 전쟁의 권리들, 살인의 권리들과 죽음의 기능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을까지를 고민하며 강의를 마무리한다.

5. 권력 이론의 활용

1) 법체계 · 규율메커니즘 · 안전장치

①법체계: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을 확정하는 일종의 법전 체계이다. 법전체계는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 그리고 금지된 행동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 유형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 혹은 사법 메커니즘이다.

②규율메커니즘: 두 번째 메커니즘은 감시와 교정의 메커니즘에 의해 법이 관리되는 것으로서, 규율 메커니즘이다. 규율메커니즘의 특징은 법전의 이항체계 내부에 죄인이라는 제 3의 인물이 등장시킨다. 죄인의 등장과 동시에 사법행위 밖에 경찰, 의학, 심리학과 같은 죄인과 관련된 부속 기술이 등장한다. 이 부속적인 기술은 모든 개인을 감시·진단하는 것에 관한 기술이자 모든 개인의 있을 법한 변형에 관한 기술이다.

③안전장치: 세 번째 형식은 법전이나 규율메커니즘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특징짓는다. 첫째로 이 안전장치는 문제가 되는 현상, 예를 들면 절도 같은 현상을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간주한다. 둘째로 해당 현상에 대해 권력은 비용을 계산한다. 마지막 셋째로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 분할을 설정하는 대신,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평균치가 정해지고, 넘어서면 안 되는 용인의 한계가 정해진다.

2) 질병에 대한 대책

①나병환자에 대한 대응: 중세까지 나병환자는 주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추방은 나병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들은 개인들이다)을 이분법적으로 분할하여 이

루어졌다. 즉 사법 메커니즘은 주로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항에 기대고 있었고 후자에 대한 '배제'를 주요 기술로 삼았다.

② 흑사병에 대한 대응 - 규율 메커니즘

16세기 이후 흑사병에 대한 통제는 나병환자에 대한 대응과는 완전히 상이한 방식을 취한다. 규율메커니즘은 흑사병이 있는 도시를 격자화 함으로써 각종의 규율과 금기들을 개인들로서의 (비)환자들에게 부과한다.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가 이미 그려 보인 바 있는 규율 권력의 작동방식이다.

③ 천연두 '접종'과 풍토병 - 안전 메커니즘

안전 메커니즘의 경우 선택된 것은 '접종'이다. 접종은 주로 사망률과 상해 정도와 후유증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감안하는 와중에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적인 부작용이나 사망보다, 즉 개인적 인간-신체보다 종으로서의 인간-인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배제나 격리가 아닌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료 캠페인이 실행된다.

안전 메커니즘에서는 갑작스런 '전염병'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풍토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한 인구 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의 형태, 성질, 확장, 지속, 강렬도 등이 문제가 된다. 이는 죽음을 야기하는 전염병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을 저하시키고 치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 노동시간 저하, 에너지 하락, 경제적 부담을 낳는 항구적인 요인으로서 간주된 질병이다. 이것은 인구 현상으로서의 질병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갑자기 닥쳐오는 죽음, 즉 전염병으로서의 질병이 아니라, 생명에 스며들어 생명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감소시키며 쇠약하게 만드는 항구적인 죽음으로서의 질병인 것이다.

따라서 노령, 신체장애, 다양한 신체적 비정상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푸코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울증, 번아웃 등도 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험, 개인적·집단적 저축, 안전 등과 같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3) 권력 메커니즘의 3중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권권력, 규율권력, 생명 권력의 3가지 유형의 권력, 혹은 사법메커니즘, 규율메커니즘, 안전메커니즘은 상호배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 세 가지 권력의 유형은 서로 배제적이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교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권력의 3중주를 이룬다.

따라서 권력의 복합적인 메커니즘은 초기에 푸코가 주장한 것처럼 시기적이고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아니다. 푸코는 초기에 주권권력은 전근대적이고, 규율권력은 근대적이며, 생명권력은 현대적인 것처럼 가정했지만 실은 언제나 존재해왔던 것은 이 권력의 복합물이다.

그러므로 현재 출현하는 것이 기존의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식으로 여러 요소가 서로 연이어 오게 되는 그런 계열은 결코 없습니다. 사법의 시대, 규율의 시대, 안전의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법률-사법메커니즘을 대체했던 규율 권력을 다시금 대체한 안전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상 일련의 복합적인 건조물이 있고 그 내부에서 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완성되어가고 아무튼 복잡하게 되어갈

기술 그 자체인 것입니다. 특히 변하게 되는 것은 지배적인 요소 혹은 더 정확히 말해서 법률-사법메커니즘, 규율메커니즘 그리고 안전 메커니즘이 맺는 상관관계의 체계입니다.⁵⁾

물론 푸코 또한 이러한 상관관계의 체계, 권력의 복합물을 문제 삼고자 했다. 실제로 푸코의 분석에서 나치즘은 주권권력과 규율권력 그리고 생명권력을 극도로 가동시켰고, 사회의 구석 구석을 가로질렀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1960~1970년대 군사정권은 권력을 안전 메커니즘에 따라 가동시켰다. 1963년 9월부터 시행한 그 유명한 ‘가족계획사업’과 1978년 시행한 ‘의료보험제 도입’은 안전 메커니즘에 적절한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매우 강력한 규율권력 또한 작동했다. 군사정권은 한 나라의 국민 전체를 같은 시간에 깨우고 같은 시간에 귀가하여 취침하도록 했고,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입어야 할 치마의 길이, 기를 수 있는 머리카락의 기장까지도 규율했다. 게다가 박정희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법적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상시적으로 ‘예외상태’를 호출했고, 구금, 강제징집, 사형까지 이어지는 주권권력을 행사했다. 여기에 더해 민족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배제의 전략까지 구사했다.

살펴본 것처럼, ‘주권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은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시도 할 때 해야 할 것은 ‘주권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 중에 어떤 것이 지배적인 사회인지만이 아니라, 이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떤 장치들을 통해 작동하는지 까지 나아가야한다. 예컨대 한국사회가 규율메커니즘이 지배적인 ‘규율사회’라던가, 자기착취가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성과사회’라는 분석은 단편적으로 남게 된다. 반대로 한국사회의 성차별을 단순히 ‘가부장제’적인 주권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진단하고 가부장제를 무너뜨리자는 주장 또한 단편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도식적인 분석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분석들은 자칫 규율의 메커니즘이나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성을 벗어날 수 없는 최우리(iron cage)로 묘사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반대쪽에서는 도리어 주권 권력을 ‘소유한’ 이들로부터 주권권력(자본가 권력이나, 남성권력 등)을 탈취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혹은 양 경향을 모두 반대하면서 이 모든 억압적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유토피아적이고 다소 메시아주의적인 해방의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사회는 특정한 역사적 구성물이자, 권력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잡한 체계다. 때문에 현재의 한국사회를 분석할 때 분절된 주권, 규율, 생명 권력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위력’에 대한 담론들을 푸코의 이론적 자원을 이용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6. 결론: 위력이란 무엇인가?

이 글에서 다루보고자 하는 사건은 ‘지위’, ‘위력’, ‘권력’을 둘러싼 담론이 집중된 안희정의 성폭력 사건이다. 나는 물론 이 사건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 글에서는 사건 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들을 다루고자 한다.

5)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르트망, 난장, 2011, p. 27.

1심의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위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했다. 그리고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의 재판부는 이와 달리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라고 해석했다.

위력에 대한 두 상이한 해석은 유죄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력이란 무엇인가? 1심 재판부는 위력을 ‘주권권력’에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권권력은 생사여탈권으로, 칼의 권리로 비유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해 징발하고, 침해하고, 탈취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주권권력의 작동은 명확하게 어떤 침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가시적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위력 해석에서는 주권권력과 규율권력의 복합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규율권력의 작동은 은밀하고 비가시적이며, 망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권력은 역설적으로 침묵, 순종, 복종의 양식으로 드러난다.

1심의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저항, 침묵, 순종성과 복종성을 동의의 표시로 간주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는 도리어 피해자의 ‘품행’을 문제 삼았다. 심지어 안희정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자료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안희정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스스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을 심사한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⁶⁾

게다가 1심의 재판부는 수행비서의 업무행위로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온 김지은 씨의 ‘규율된’ 노동을 순수한 자발적 행위로 판단했다. 수행비서로서 김지은씨는 24시간 안희정의 연락과 업무에 ‘대기’상태여야 했다. 또한 수행비서에게 요구되는 ‘감정노동’의 측면은 간과되었다. 김지은씨가 노동으로서 안희정의 심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측면을 오로지 그녀의 ‘팬심’ 혹은 ‘연모의 감정’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모두 위력을 ‘강제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푸코는 권력을 단순히 행사되는 것, 강제력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오히려 푸코의 관점에서 권력은 ‘주체화(subjectivation)-예속화(subjection)’와 관련된다. 즉 권력은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주체(라 간주되는 것) 자체를 생산해내는 양식이다. 권력은 누군가를 강제할 뿐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조건 지운다. 그러므로 위력은 어떠한 일반이론 만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성과 관련된다.

위력을 존재와 행사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구체적인 권력의 복잡한 총체가 법체계로 번역되는 과정이다. 법의 언어로 기입되기 위해 모종의 꺾여나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때문에 1심과

6) 권김현영(2019),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p. 45.

2심 의 '위력'에 대한 해석은 모두 불충분하다. 법적 판단은 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죄가 있다면 양형을 판단한다.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다룬 것처럼 처벌은 일반화되고 유순화 된다. 따라서 형벌은 크게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이분된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시 하는 '위력'은 항상 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법의 논리는 결코 권력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몇 중의 작업이 필요하다. 법의 논리에 가능한 만큼을 기입하고 잘못 기입된 것들을 지워나가는 일종의 번역·교정 운동. 그리고 법을 해석할 수 있는 틀 자체에 개입하는 일종의 메타 언어에 대한 운동. 그리고 법체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장치와 주체를 새롭게 배치해 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을 초월하는 층위의 운동이 필요하다. 소위 법 외적인 영역, 즉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정초하고 사회 자체에 기입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새로운 주체화-예속화의 양식을 창출하는 문제이고, 버틀러의 언어로는 수행성에 관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시공간성, 즉 푸코의 언어로는 특정한 시공간, 망의 문제를 부르디외의 언어로는 '장'의 문제를, 퀴어이론의 관점에서는 '정동'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7. 참고문헌

강선형(2014),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제78권, pp. 129~148.

권김현영 외(2019),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램케, 토마스(2015),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성보, 그린비.

진태원(2018), 「마르크스와 알튀세르 사이의 푸코」, 『철학사상』, 제68권, pp. 195~237.

푸코, 미셸(2001), 『비정상인들』, 박정자, 동문선.

_____ (2010), 『성의 역사 - 제 1권 지식의 의지』, 이규현, 나남출판.

_____ (201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난장.

_____ (2014), 『정신의학의 권력』, 오트르망, 난장.

_____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김상운, 난장.

_____ (2016), 『감시와 처벌』, 오생근, 나남출판.

젠더 규범의 권력을 박탈하기 위한 초석,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⁷⁾

버틀러 연구 세미나
이아름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여성과 미추(美醜)의 역사: 탈코르셋 운동이 대두되기까지

2) 탈코르셋 담론의 내용: 아름다움은 권력이 아니다

3)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①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과 자기의 테크놀로지(self technology)

② 주체적 코르셋과 생산적인 권력(productive power)

③ 트랜스젠더와 드랙,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3. 결론

해방적 모델 없이 젠더 규범의 권력적 위상에 저항하기: 버틀러가 제공한 통찰

4. 참고문헌

1. 서론

미용(美容)으로부터 해방을 부르짖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 강력한 시대적 요구에, ‘메갈리아’⁸⁾ 이후 리부트 세대인 10~20대 넷-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탈코르셋’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탈코르셋 운동이란 여성들이 스스로 삭발을 하거나 화장품을 버리는 등의 행위를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 업로드 하고 다른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을 일컫는다. 여기서 코르셋은 일종의 제유(提喻)로써 활용되었다. 즉 코르셋이란 여성의 허리를 가늘게 만드는 보정속옷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오직 미(美)를 위해 여성에게 강제되는 것들을 통칭하는 이념적 프레임이기도 하다.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이 이 운동에 열광하였지만, 반발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적지 않았다. 왜

7) 변경 전 발표문 제목은 “젠더 규범의 권력적 위상을 박탈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고찰: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트러블』, 『의미를 체험하는 육체』를 중심으로.”

8) <http://www.megalian.com>. 2015년 한국의 메르스(MERS) 사태 이후 등장한 사이트이다. 분리주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사이트인 워마드(<https://womad.life>)의 분화 이후 점차 이용자의 수가 감소하여 2016년에 폐쇄되었다. 2015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당시 오프라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포스트잇 운동을 주도하면서 여성들의 폭발적인 사회적 움직임 이끌어냈다.

나하면 탈코르셋 담론이 제시하는 해방적인 외양의 표현들이 ‘코르셋’이라 일컬어지던 젠더 규범들만큼이나 획일적이고, 규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지속되자,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터져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탈코르셋 운동, 담론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의 필요성 하에 기획되었다. 먼저 미추와 여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긴장관계를 형성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탈코르셋 운동의 모티브를 추적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탈코르셋 담론의 주된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운동을 둘러싼 쟁점⁹⁾을 학문적 개념들과 더불어 분석·비판해보고자 했다. 끝으로, 버틀러가 제공한 이론적 자원을 통하여 전복성의 범주를 명명하지 않고서 젠더 규범의 권력적 위상에 저항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고자 하였다.

2. 본론

1) 여성과 미추(美醜)의 역사, 탈코르셋 운동이 대두되기까지.

클로딘느(2018)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뛰어난 육체와 지성을 두루 갖추어야 아름답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본질은 정신에서 포착할 수 있다고 여겨졌으며, 용모만 출중한 소년보다 용모는 좀 떨어져도 덕, 용기 등을 갖춘 소년을 더 아름답다고 여겼다. 때문에 여성은 존재론적으로 추한 존재가 되었다. 고대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철학자와 의사들¹⁰⁾은 여성을 병약한 몸, 지적 능력을 계발할 수 없는 몸, 덕을 쌓을 수 없는 몸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병약하기에 신체적으로도 남성보다 열등하고, 만약 신체적 아름다움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저 외양에 그치는 거짓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추한 존재로 태어난 여성은 화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해야만 아름다워질 수 있었지만, 화장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하찮은 아름다움이였다. 기독교에서도 여성은 원죄를 가진 존재,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인류를 도탄에 빠트린 존재로 설교되었다. 여성은 추함을 원죄로서 간직한 존재였던 것이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는 추한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발전되었다. 여성은 원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닌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탈바꿈되었다. 모성 그 자체가 여성의 존재 이유가 된 것이다. 임신, 출산 모유수유, 육아 등은 자연적으로 여성에게 마땅히 부여된 역할로 간주되었다.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지 않거나, 독신 여성이거나, 자위를 하는 여성, 레즈비언은 추한 여성이 되었다. 일례로 1825년 의사 로지에는 자신의 저서 『여성의 비밀스러운 습관들, 자위』에 자위 때문에 외모가 추해진다는 삽화를 실었다. 이런 의학들에 과학적 근거는 전무했다. 양성애나 레즈비언은 공개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다.

건장한 체격에 ‘남성’같은 외모를 가졌거나 남자처럼 옷을 입은 여자는 여성성을 의심받았다. 당시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지위나 인간관계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이는 ‘자연이 부여한 역할’을 유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여성이 키가 크거나, 근육질이라거나, 가슴이 작거나 똑똑하면 남성으로 위장하기 용이했다. 그렇기에 사회는 ‘남자 같은 여자’를 ‘여성의 역할을 하지 않는’ 즉, 추한 여성으로 여겼고, 여자

9) 다만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무시하였다. 고대부터 2019년인 현재까지 발전이라곤 한 적이 없는 주장에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여러모로 낭비라고 판단했다.

10) 존 밀턴,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헤지오도스, 자크 데장텔, 플라톤, 프랑수아즈 프롱티시-뒤크루, 클레멘스, 크리스틴 드피장, 장 드 뵈, 마르보드, 앙드레 르 샤플랭, 알바로 펠라요, 질 드 벨메르, 베르나르댕, 크세노폰, 장 리에보, 앙브루아즈 파레 외 오조역명. 번거로운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게르, 클로딘느(2018), 『못생긴 여자의 역사』, 김미진, 호밀밭, pp. 26~48>을 참조.

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은 중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성서인 『신명기』, 『신학대전』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클로딘느가 당시 ‘추한 여성’을 ‘괴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논의의 기원은 푸코(1999)가 『비정상인들』을 통해 제공한 통찰에서 찾을 수 있다. 푸코는 괴물, 교정불가능자, 자위행위를 하는 어린이를 비정상인으로 규정하는 규율 권력을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의 괴물은 ‘법’을 초과하고, 저항하는 자이다. 즉 남자 같은 여자,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탈하는 여자, 남성과의 성행위가 아니라 자위를 하는 여자는 괴물이면서 동시에 교정불가능한 비정상인으로 진단되었다. 몽테뉴의 목검담에 의하면 실제로 직조공, 병사, 의사로 변장했던 젊은 여자들은 ‘하늘의 법, 성서, 성서의 가르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했다.

근대에 이르러 ‘예뻐지는 일’이 의무가 되었고,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가 되었다. 못생긴 여자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무능력자로 간주되었다. 근대에도 아름다운 얼굴과 화장, 몸의 형태는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와 같았다. 희고 맑은 색의 얼굴이 강조되었고, ‘구릿빛’ 피부의 민족을 희화하기도 하였다. 종족 번식과 관련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 결과, 엉덩이는 커야 하는 한편 몸의 굴곡을 강조하는 코르셋과 다리를 가늘게 해주는 하이힐이 등장하였다. 코르셋이 출현한 것은 기원전 1800년의 일인데,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것은 르네상스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고래 뼈로 만들어진 근대의 코르셋은 가슴을 모아 유방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했다. 빈약한 가슴은 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너무 비만한 몸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마른 몸은 굴곡이 없고, 가난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추함의 근거가 되었다.

20세기부터는 거울의 일상적인 사용, 사진과 영화의 발명, 패션잡지와 광고의 홍수, 인터넷 등을 통해 여성의 재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빠르게 확산된다.¹¹⁾ 이와 동시에 여성해방운동을 통해 그동안 재현되어온 여성과는 다른 여성들이 출현한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프랑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실현된 이래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시민으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이제 여성은 ‘정치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여성은 추함과 끝나지 않는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이후 탈코르셋 담론의 확산은 예견된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탈코르셋 운동은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인형’이 아닌 ‘사람’으로 살겠다는 기조로 출발하였다. 메갈리아 이후 의식화된 넷-페미니스트들에게는 익숙한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서 탈코르셋 운동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탈코르셋 운동은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¹²⁾ 담론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논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2) 탈코르셋 담론의 내용: 아름다움은 권력이 아니다.

이제부터 전개될 내용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한 내용이다. 트위터리안 “탈코르셋 강요 봇”, “탈코르셋은 선택이 아니다”, “탈코르셋봇” 등을 비롯하여 ‘탈코르셋’, ‘탈코’를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글들의 언어를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않은 채로 옮겨 적었다. 다만 그들의 논리를 매끄럽게 추적하기 위해 재조합하고, 재정렬하였다. 탈코르셋 담론은 외모 권력이 허상임을, 가짜 권력임을 강조한다. 남성이 욕망하는 여성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굴절 권력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탈코르셋 운동을 ‘권력을 갖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한다.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을 탈환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을 권력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며, 남성을 예측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

11) 사게르, 클로딘느, 『못생긴 여자의 역사』, p. 199.

12) 모든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TERF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페미니즘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http://theterfs.com/2013/10/11/terf-where-the-term-comes-from>

면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여성성을 없애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아직 사회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성들은 욕망 당하는 존재가 아닌 욕망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단일한 여성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탈코르셋 운동을 하는 한편 동시에 남성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이른바 ‘역코르셋’을 씌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탈코르셋 되어야 하는 요소의 종류는 여성에게 강요되어온 ‘코르셋’ 만큼이나 다양한데, 다소 웃음을 유발하는 조어가 흥미롭다. 치마나 오프 솔더¹³⁾와 같은 이른바 ‘여리여리한 옷’은 ‘남리남리한 옷’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남성에게 ‘역코르셋’을 씌워야 한다는 기획과 닿아있다. 탈코 강령을 가슴 깊이 의식화 했느냐 안했느냐를 기준으로 겹-탈코(=외적 탈코), 속-탈코(=내적 탈코)로 나뉜다. 말하자면 겹-탈코는 ‘요행’을 바라는 행위로 간주된다. 탈코르셋 운동을 한 것처럼 SNS에 게시글을 올리지만 립스틱을 발랐거나 머리에 걸을 넣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겹-탈코로 분류된다. 긴 머리카락은 ‘단백질 히잡’이라고 불린다. 이때 히잡은 코르셋과 마찬가지로 여성 억압의 대표 상징으로 비유된다. 유표성¹⁴⁾을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에 두기 위해 노브라라는 말 대신 유브라라는 말이 고안되었다. 언어의 실용적 사용을 위해 접두사를 영어에서 한자로 바꾸었다는 점도 재치 있다. 이들 앞에서 선불리 여성의 자유를 언급하는 이는 ‘스까’¹⁵⁾, 혹은 ‘리버럴’이라고 불린다. 조어상 ‘스까’는 교차성 페미니스트를, ‘리버럴’은 주로 2세대의 사상을 물려받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를 지칭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용례상으로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밖에도 위생 코르셋¹⁶⁾이나 슬라임 코르셋¹⁷⁾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코르셋도 있었다.

이렇듯 탈코르셋 담론에서 설명하는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의 자유와 직결되지 않는다. 또한 이 비장한 사명을 가진 운동은 여성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그것은 부수적 이득일 뿐이다). 이 운동은 가부장제를 격파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므로 행위자의 행복은 무기한 보류된다. 이들의 논리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이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욕망하면서 행복해하는 여성은 족쇄에 길들여진 노예이며, 백래시이고 여성혐오의 재생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유보(suspension)되는 행복에 대해서 로렌 벌랜트는 잔인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라고 했다. 이는 사라 아메드의 행복에 대한 논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벌랜트가 말하는 잔인한 낙관주의란 “우리가 애착심을 품는 욕망/ 환상의 대상이 실은 우리 자신의 안녕에 해가 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잔인한 낙관주의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애착심이 우리 자신을 마모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에서” 작동한다.”¹⁸⁾ 그런 의미에서 덜 불행해질 것이라는 현실의 행복을 비용을 치루는 것은 잔인한 낙관일지 모른다. 일상화된 위기는 “이것만 넘어가면…”이라는 낙관주의적 희망을 계속해서 좌절시킨다. 무엇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붙들려 애착심을 품는 것은 일종의 ‘정신승리술’이 된다. 낙관주의가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그래도 조금만

13) 목에서 어깨까지 노출시킨 디자인의 복장.

14) 형태상으로나 의미상으로 대립을 이루는 두 어휘소를 양분시킬 때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것을 무표향으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을 유표향으로 두는 것을 유표성이라고 한다.

15) 음식을 ‘섞어 먹는’ 부산의 식문화를 희화화하는 표현으로, 부산의 방언 ‘스까묵다’에서 유래하였다. 스스로를 지칭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6) “샤워는 우리의 몸을 살균시켜 정체불명의 비누 노예로 만든다.” 트위터러인 ‘탈 위생 코르셋 걸’의 게시글. <https://twitter.com/c3jior9szcfvhp/status/1080907457784770560?s=21>

17) ‘슬라임’이란 장난감이 유행했던 시기에 제기된 주장이다. 어린이 장난감인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것은 여성 놀이 문화의 퇴행이며, 사회가 여성에게 어린이이기를 강요한다는 다소 비약된 논리이다.

18) 박미선(2015), 「로렌 벌랜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여/성이론』제33권, 도서출판 여이연, p. 103.

더 노력하면 가까워진다'는 근접성(proximity)의 영역에 있다. 이것이 주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행복은 마모되어가고, '천천한 죽음'으로 추동하는 매커니즘이다.

한편, 해고 등의 리스크를 걱정하며 탈코르셋 실천에 소극적인 여성들은 '후려쳐'야 한다. 탈코르셋 운동은 '사회운동'이므로 리스크는 당연히 감내해야만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리스크에는 '목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의하면 생명이 위협이 되더라도 이 사회운동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이유는, 코르셋 문화가 어린이들에게 승계되어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를 '랜팸'이라 부르는 영-페미들이 주도하는 경향의 탈코르셋 담론은 '올드-페미'나 '여성학 연구자'에게 우호적일 수 없다. 이들이 보기에 '올드-페미'나 '여성학 연구자'들은 단지 이론화 작업에만 몰두해온 학자들이기에 '현실적인' 여성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랜팸'들이 해묵은 역사적 과업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운동임을 강조하는 태도는 구 운동권 선배들이 후배를 대할 때 보이는 교조적 태도와 비슷한데, 기성 운동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왜냐하면 '순수한'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운동에 타운동권들의 개입은 불순물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변화의 주역이란 오로지 '랜팸' 여성들이고, 또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트랜스젠더에게 갖는 적개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탈코르셋 담론에서 트랜스젠더와 크로스드레서, 드랙의 젠더 수행은 격렬하게 거부되었다. 이 담론에 따르면 이들은 코르셋을 주워 입으면서 여성의 '여성성'이나 '외모 권력'이라는 허상을 공고히 하는 자들이다. 트랜스젠더는 탈코르셋 운동이 깨부수려하는 가짜 여성성을 모방함으로써 여성성 규범을 굳건하게 만든다고 설명된다. 게다가 드랙(퀸)은 여성성을 희화화하기에 여성혐오적이기까지 하다고 설명한다.

3)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①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과 자기의 테크놀로지(self technology)

이러한 내용을 둘러싸고 참으로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쟁점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아쉽지만 몇 가지의 한정된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탈코르셋 담론은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한다. 보이콧, 즉 구매하지 않는 구매주체로서 여성들은 미용 산업, 아이돌 산업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그들은 코르셋을 착용하거나 아이돌 팬 활동을 할 시간에 '자기계발'에 힘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계발'이라는 말의 등장은 의미심장하다. 로렌 벌렌트가 제공한 '수평적 행위능력(lateral agency)' 개념은 탈코르셋 담론이 제시하는 소비자로서의 여성을 재고하게 한다. 벌렌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압력 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의 주권성이란 객관적 상태로 오인되는 환상이다. 즉 스스로를 합법화하는 개인적 제도적 수행성을 열망하는 위치이자 이 위치가 제공하는 안정과 효율성의 환상과 관련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정서적 느낌이다."¹⁹⁾ 그리하여 수평적 행위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주권성과 의지는 고갈 중인 상태라는 점을 포착하게 하였다. 또, 오혜진(2009)은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self technology)' 개념을 활용한 논문 「1920~1930년대 자기계발의 문화정치학과 스노비즘적 글쓰기」에서 '자기 계발'이 외지인인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통치 기술이었다고 논증한 바 있다. 오혜진에 따르면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자기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발의 기제가 제국의 식민 기획과 조우함으로써 조선인의 내면성을 딜레마적으로 구성해냈다.

그런데 현대 사회 전반에 퍼진 이 '자기 계발' 신화는 미추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에게

19) 박미선(2015), 「로렌 벌렌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p. 97, 재인용.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앞서 우리는 미추와 관련한 가혹한 기준이 ‘자기 계발’, ‘자기 관리’라는 개인화된 이름으로 여성에게 강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기 계발’이란 이름의 지배의 테크놀로지는 성별화된 방식을 띠었다. 공적 영역이 오직 남성의 지위였던 수천 년을 지나 도래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은 ‘남성의 공적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을 ‘능력, 노력 없이 대가를 얻은 무임승차자’라고 인식하는 담론 앞에서 여성할당제²⁰⁾ 등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무색했다.

권김현영이 엮은 책 『남성성과 젠더』에서는 한국 남성성을 ‘식민지 남성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의 경험을 겪은 제 3세계 남성들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약자’로 정체화 한다. 이때 여성의 역할은 피해자인 남성을 보듬어야 하는 존재로 정의되고, 젠더권력은 부인된다. 자본주의의 폭력이 편재하는 신자유주의는 식민지 남성성의 열패감과 더해져 드디어 ‘역차별’ 담론을 낳는다. 이렇듯 성차별을 부인하는 남성들 때문에 ‘자기 계발’ 신화는 여성에게 더욱 혹독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탈코르셋 담론이 부추기는 ‘자기 계발’이라는 실천이 환상적으로 구성해내고자 하는 ‘자기계발을 하는 여성’, ‘자본주의적 소비력을 가진 여성’은 신자유주의적이고 또한 성차별주의적인 현대의 통치 체제에 순응하게 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② 주체적 코르셋과 생산적인 권력(productive power)

여성이 ‘코르셋’을 원하는 행위는 노예화된 욕망일까? 그것은 그저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고 오인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주체적 욕망이란 무엇일까? 탈코르셋 하고자 하는 욕망은 주체적 욕망일까? 어떤 점에서 지배적 권력과 완전히 무관하게 주체화된 욕망을 욕망하는 것은 영원히 도달 불가능한 신기루에 종속되는 것일지 모른다. 즉 ‘코르셋’을 스스로 착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젠더화된 욕망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젠더화 되지 않은 욕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탈코르셋 실천 욕망은 기술적(descriptive)²¹⁾, 무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지극히 성별화된 욕망이다. 탈코르셋 담론은 남성적인 모든 젠더 표현은 편하고 주체적이고 유리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젠더 표현을 규제한다. 탈코르셋 담론이 “나는 긴 머리가 더 편하던데”라는 어떤 여성들의 주장을 제압하는 논리는 ‘그게 편했으면 남자들도 했다’는 다분히 순환적인 논리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젠더 규범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남성들이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라면 그것은 주체적인가 아니면 종속적인가.

이러한 탈코르셋 담론의 논리는 남성 권력이 피권력자인 여성을 억압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 ‘권력 구도에서 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버틀러는 권력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체로서 구성되어진- 스스로 행동하는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버틀러에게 권력은 ‘생산적인 권력(productive power)’으로서, 단지 억압만 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 법은 행위주체의 반복된 복종을 통해 스스로 증식하는

20) 여성할당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하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공권력이 개입하여 소수자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21) ‘규범적(regulatory)’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지배적 제도 규범의 권력효과가 행사되기 이전의 중립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버틀러는 ‘기술적’인 것은 없으며 모든 정체성이 ‘규범적’이기 때문에 권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버틀러, 주디스(2008), 『젠더트러블』, 조현준, 문학동네, “버틀러의 주요 개념들.”

데, 법에 의해 호명당한 주체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그것에 내면화되지 않는다. 법은 호명할 수 있지만, 호명했기 때문에 호명한 자의 반응에 종속된다. 그리고 주체는 비록 법에 의해 호명 당했지만, 호명을 거절하는 ‘나쁜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호명, 복종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법과 주체의 변증법적 관계 때문에 전복과 저항의 ‘역담론’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다. 그러나 젠더 규범으로부터 입체화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전복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코르셋 운동은 역담론 중 하나일 수 있다. 여성에게 ‘자연적인 것으로서’ 주어진 복장을 거절하고 기꺼이 나쁜 주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탈코르셋 운동이든 드랙이든 역담론의 전범적인 사례일 수 없다. 정형화된 이상이란, 마치 시적 의미를 상실한 시어처럼 이상적 가치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탈코르셋이 ‘여성성’에 저항한다고 말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강제된 여성성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 오히려 탈코르셋 담론은 ‘여성성’의 구성적 우울증²²⁾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③ 트랜스젠더와 드랙,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랜팸’과 결합한 탈코르셋 담론은 트랜스젠더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들에게 트랜스젠더는 여성성이란 환영을 재생산하는 악(惡)이다. 외과적 수술은 트랜스젠더의 진정성을 파악하는데 기준이 되곤 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자는 여성복에 도착적 성애를 느끼는 변태 성욕자로, 수술을 한 자는 자연의 실수로 태어난 가엾은 자로 인식된다. 대개 이러한 논리에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자궁을 가진’ 단일한 주체로 안정된다. 버틀러는 “특정 종류의 젠더 표현물은 거짓이거나 변종, 다른 종류는 진짜이거나 원본으로 입증되었다고 규정하는 진리체계에 반대했다.”²³⁾ 어떤 구체적인 젠더화된 방식의 삶이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하려는 진리담론이 소수자 젠더와 섹스의 실천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든다.

버틀러에 의하면 젠더는 처음부터 규범적이고 무대 위에서 배우가 행하는 퍼포먼스처럼 언제나 행위로 나타난다. 이것이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의 첫 번째 공식이다. 우리가 안정된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지배적 이성애들’ 안에서 여자의 기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뉜 것이다. 우리는 앞서 클로딘느의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여성이 ‘괴물’ 혹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구획되었던 역사를 알아보았다. ‘자위하는 여성’ ‘모유수유하지 않는 여성’ ‘육아에 소홀한 여성’ ‘생리 양이 적은 여성’ ‘남자 같은 여성’ ‘노인 여성’ 등은 지배적 이성애들에서 ‘여성’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이렇게 진짜 여성을 구분 짓는 젠더 규범은 언제나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바, 여성으로 불리는 모두가 가짜 여성이 된다. 이처럼 버틀러는 젠더의 당연시된 지식이 실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력적인 경계선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였다.

버틀러에 따르면 여성 범주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인 ‘여성들’의 층이 구성되는 다양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또한 정치적인 접점을 경시하거나 간과한다. 페미니스트의 행동은 안정되고 통일된 정체성으로부터 설정되어야 한다는 강압적 기대만 없다면, 여성이라는 범주의 의미가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더 적합한 것이 될 것이라

22)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을 거두어 일정 기간 애도의 시간을 갖다가 사랑의 대상을 옮겨야 한다. 그런데 우울증의 경우에는 다른 대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상실한 대상이 무의식적인 것이어서 무엇을 상실했는지 모르며, 따라서 극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우울증 환자는 이 대상을 자아의 일부로 합체(incorporation)한다. 따라서 우울증은 사랑했던 대상이 내가 되는, 즉 나와 대상 간의 분명한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버틀러, 주디스, 『젠더트러블』, “버틀러의 주요 개념들.”

23) 버틀러, 주디스, 『젠더트러블』, p. 45.

고 버틀러는 설명한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육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물질화시키고자 하는 담론이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또한 육체들이 자신들의 물질화의 추진체인 규범들에 전적으로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징표다. 여성성을 희화화 한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드랙’이 여성성을 모방하는 것은 젠더를 모방하면서 동시에 젠더 자체의 유연성과 모방성이라는 구조를 함께 드러낸다.

이처럼 “A 같은 B”라는 직유법을 통해 소개된 젠더는 ‘실제’를 결여하고 환각적인 외양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면상의 실체가 비실체와 쌍을 이루고 있는 이런 지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실제적인지 안다고 생각하며, 젠더의 이차적 외양은 그저 인공물, 연극, 가짜, 환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런 지각의 기초를 세우는 ‘젠더 실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는 그 사람의 해부학 구조를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무엇이고 어떻게 입었는지에서 지식을 끌어올 것이다. 만약 우리가 트랜스젠더의 의복 트랜지션이 젠더 규범을 전복시키는 모범적 예라고 한다면, 몸을 감싸고 표현해주는 옷에서 안정된 해부학 구조에 대한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몸은 작동 이전의 것, 전환적인 것, 혹은 작동 이후의 것이 된다. 몸을 ‘본다’는 것조차 **사람이 무엇을 볼 때 왜 이를 통해서 보는 범주가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이 보고 있는 몸을 확실히 읽어낼 수 없을 때가 자신이 만난 몸이 남자의 몸인지 여자의 몸인지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순간이다. 범주들 간의 동요 자체가 문제의 몸의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범주들이 의문시될 때 젠더의 **실체**는 위기에 몰린다. 이는 우리가 ‘실재’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젠더의 지식으로 소환한 것이 사실상 변화되고 수정될 수 있는 실체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을 전복적이라 불러도 좋고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통찰이 그 자체로 정치적 혁명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혁명은 가능한 것과 실재인 것이라는 개념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버틀러는 말한다. 그것은 젠더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산, 재생산되며 젠더의 가능태는 무엇인가 라는 기본 범주를 재고해볼 것을 촉구한다. 젠더 규범이 인식 가능한 인간이 무엇인지 또 ‘실재’로 간주될 것과 간주되지 않을 것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한, 젠더 규범은 몸이 어떤 주어진 합법적 표현물이 될 존재론의 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젠더트러블』에서 확실히 규범적인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 비실재, 인식 불가능으로 간주되어온 몸들에게 합법성을 확대하려는 주장일 것이다.

3. 결론

해방적 모델 없이 젠더 규범의 권력적 위상에 저항하기: 버틀러가 제공한 통찰

버틀러가 제공한 수행성 개념은 대립대상에 권력과 저항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 관계를 기술 해주면서, 불순한 자원들로부터 미래를 주조해내야만 하는 정치투쟁과 같은 작업을 형성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게 되는 권력의 자기 거부를 묘사해준다. 다음으로 뒤따르는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장려하는 권력과 우리가 거부하는 권력 간의 차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버틀러는 그것이 ‘얇’의 문제라고 대답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권력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권력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권력을 형태변환시키려고 하는 만큼 권력에 의해 스스로 형태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동시성은 우리의 행동 자체의 조건인 바, 미리 헤아려 볼 수 없는 행위 효과들이 이러한 효과들의 전복적인 기약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리 그려볼 수 있는 효과들이기도 하다. 담론적인 산물들로 이해될 수 있는 수행적 언술들의 효과는 주어진 언술의 최종

목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들의 의미화 가능성의 유효범위는 언술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코 통제될 수 없는 영역이다. 언술은 항상 타자가 자기 자신을 통해,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수행하는 언술이며, 또한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활용될 도구로서 인식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불특정한 타자’와 ‘우리’의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조건이자 결속력을 지니는 권력의 양가성으로서, “언어 사용자를 사용하는 동시에 언어 사용자의 권리박탈의 조건이 되는 언어의 우울 증적 반복이기 때문이다.”²⁴⁾

이제 우리는 버틀러가 제공하는 통찰을 통해 우리의 운동이 타인의 위태로운 삶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살 수 있을만한 삶이라는 우리 자신의 주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운동의 결점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우리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하든, 평등에 대해 논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회운동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 권력으로부터 배제 당한 삶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또는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형성하고 완고한 육체적 삶들로 현전한다. 여기 저기에 산발적으로 분포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가진 정치적 중요성은 대중 의지의 행사이다. 육체들이 수행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일한 메시지’도 ‘상층부로부터 조직된 육체’도 아니다.²⁵⁾

육체의 집단적 현전으로 번역되는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라는 말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 우리는 공적인 삶의 그림자 속으로 말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들의 공적인 삶을 구축하고 떠받들고 있는 바로 그 결핍의 존재가 되지 않았다.”²⁶⁾

버틀러에 의하면 집회는 권력이 특정한 사람들을 박탈된 이름으로 호명할 때, 그들의 사회조직인 민주주의가 추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인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비록 집회를 하는 거리에서 경찰과 마주하고, 반대 세력과 마주하게 되는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더라도, 그 육체들은 완고하고 지속성이 있는 육체이다. 육체들이 보여주는 이런 수행적 상연은 미디어를 통해 시공간을 넘나들고, 우리의 가치는 새로운 차원의 집단적 저항의 형태로 표명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담론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뻗어져나가는 이 집단화된 힘, ‘탈코르셋 운동’을 통해 우리는 젠더 규범에 권력적 위상에 저항하는 초석을 발견할 수 있고, 더욱 열린 저항의 길을 상상하게 된 것이다.

24) 버틀러, 주디스(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인간사랑, p. 450.

25) 강조는 필자에 의함.

26) 버틀러, 주디스·아타나시오우, 아테나(2013),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응산, 자음과모음, p. 315.

4. 참고문헌

- 권김현영 외(2017), 『대한민국 넷페미사』, 나무연필.
- 권김현영 외(2011), 『남성성과 젠더: 하이브리드 총서』, 자음과모음.
- 김보명(2018),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pp. 1~31.
- 김세은 외(2013), 『다시 보는 미디어와 젠더: 여성커뮤니케이션 연구 총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루인(2018), 「젠더로 경합/불화하는 정치학: 트랜스젠더퀴어,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연구의 이론사를 개괄하기」, 『여/성이론』, 통권 제38호, pp. 101~131.
- 박미선(2015), 「로렌 벌레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여/성이론』 제33권, 도서출판 여이연, pp. 99~125.
- _____(2016), 「행복을 통한 규율과 “정서적 변환”의 정치 비판- 사라 아메드의 『행복의 약속』」,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2호, pp. 53~78.
- 배리나(2018),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페미니스트가 되다』, 북로그컴퍼니.
- 버틀러, 주디스(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인간사랑.
- _____(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문학동네.
- _____(2013),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 인간사랑.
- _____(2015), 『젠더 허물기』, 조현준, 문학과지성사.
- 버틀러, 주디스·아타나시오우, 아테나(2013),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응산, 자음과모음.
- 사게르, 클로딘느(2015), 『뭇생긴 여자의 역사』, 김미진, 호밀밭.
- 오혜진(2009), 「1920~1930년대 자기계발의 문화정치학과 스노비즘적 글쓰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현재(2016),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 조현준(2014), 『젠더는 패러디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트러블 읽기와 쓰기』, 현암사.
- 정희진(2013),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 푸아, 재스비어(2016),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학과사회』, 제29권, pp.88~118.

Jasbir K. Puar(2018), “The Cost of Getting Better: Suicide, Sensation, Switchpoints”, North Carolina, United States of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pp, 149~158.

**정동을 통해 권력을 재사유하기:
'행복의 약속'을 둘러싼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정치**

퀴어이론 연구 세미나
이규선

<목차>

1. 들어가며
'혐오 시대'의 감정의 위상
2. 행복은 무엇을 하는가: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3. 행복의 조건으로서 '잔인한 낙관': 로렌 벌랜트, 『잔인한 낙관』
3. 나오며
정동의 정치학을 상상하며
4. 목차

1. 들어가며

'혐오 시대'의 감정의 위상

많은 이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요약하는 키워드로 '혐오'를 꼽는다. '혐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남혐'이 '여혐'과 동등한 선상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감정으로 총진된 개념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혹자는 '혐오 시대'의 문제는 분노와 증오 등 부정적 감정의 과잉이라 진단하면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점은 혐오를 재생산하는 수많은 담론이 바로 이 같은 감정과 이성간의 대립구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성을 우위에 놓는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에서 감정은 비이성-광기로 규정된다.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라는 발화는 기본적으로 이성애의 호소이다. '프로블펀러'에 대항하는 방식이 '팩트 폭행'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감정과 이성간에 작동하는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신과 몸이라는 오래된 이원론적 사유의 연장이다.

정신과 몸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하여 성립된 서구의 인식론에서 정신은 몸의 우위에 선다. 몸이라는 굴레를 초월한 정신은 몸 위에 군림하며 몸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몸은 정신의 인식 대상으로 격하되고, 전용의 자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정신과 몸의 축을 따라 생성되는 모든 이원론-예컨대 문명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을 관통하는 지배의 논리다. 정동은 정신과 몸을 구분하고 정신에 특권을 부여하는 이 같은 전통적 인식론에 도전한다. '신체

와 신체의 마주침 속에서 생성되는 힘과 활력'에 주목하는 정동(affect)은 기본적으로 몸의 언어이자, "정신에 대한 몸의 반란"이다. 몸은 더 이상 읽혀지기만을 기다리는 인식 대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그대로의 존재론적 위상"을 부여받는다(김지영, 2016: 363). 인간은 사유하기 이전에 몸으로 감각하는 존재이다. 정신, 즉 머리는 몸의 외부가 아닌 몸의 일부로서 제 자리를 찾는다.

정동의 렌즈를 통해 봤을 때 일상은 정치적인 것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는 지점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서 우리 앞에 열리게 된다. 일상을 메우는 수많은 정동적 과정 속에서 '권력'은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한다. 감정이 주로 개인의 내밀한 심리 차원에서 다루어졌다면, 본 글에서 소개할 정동 연구들은 감정의 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에 주목한다. 이들은 감정의 개별적 차이를 조명하는 것보다는 신체와 신체의 만남 속에서 느낌이 생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본 글에서는 지난 세미나에서 다룬 정동 연구들을 지침 삼아 신자유주의적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정동적 연결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사라 아메드가 『행복한 대상』에서 제시한 행복분석을 따라가며 어떻게 행복이 특정 질서 속으로 편입되도록 개개인들을 추동하는 정서적 매개가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로렌 벌랜트의 분석을 따라 '행복한 삶'에 대한 낙관이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잔인한 낙관'이 되는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혐오의 시대'로 규정지어지는 지금 여기에서, 정동이 갖는 실천적, 이론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행복은 무엇을 하는가: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기존에 행복에 대한 철학적 사유들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골몰했다면, 『행복한 대상』에서 사라 아메드는 또 하나의 행복론을 제시하는 대신 질문의 전환을 꾀한다. 행복이 무엇인가[what is happiness]에서 행복은 무엇을 하는가[what does happiness do]로, 즉 행복을 통해 발휘되는 사회적 효과가 무엇인지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우선 아메드는 행복을 우연히 발생(happen)하는 것, 즉 무언가에 의해 정동되는 것이라 말한다. 특정한 대상과의 내밀한 접촉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정동될 수 있다. 이 때 정동은 평가와 판단과 연루되어 대상으로 '향하게'하는 지향성을 갖는다.

'좋은 방식으로' 정동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정향을 포함한다. ... 한 대상을 정동적 이거나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경험한다는 말은 단지 한 대상으로 향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상 주변의 '모든 것'으로 향해 있다는 말이다. 그 '모든 것'에는 그 배후에 있는 것, 즉 그것의 도래의 조건들까지 포함된다.²⁷⁾

우연히 발생하지만 점차 좋은 것들과 관계하면서 정동과 대상 사이의 연합이 생성된다. 이러한 연합은 습관을 통해 유지되고 보존된다. 행복한 대상은 주변으로 둘러지고 순환되면서 금

27) 아메드, 사라(2015). 「행복한 대상」,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갈무리, pp. 61~63.

정적 정동의 가치를 축적하고, 집단은 이러한 대상을 향한 공유된 지향을 중심으로 응집한다. 축적과 응집의 과정 속에서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상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약속으로 기능하게 된다.

행복한 가족을 예로 들어보자. 가족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행복을 주기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를 좋은 식으로 정동하기 때문도 아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족을 좋은 것으로 보는 정향, 즉 충실성에 대한 대가로 행복을 약속하는 존재로서 가족을 보는 정향을 공유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정향이 우리가 하는 일의 윤곽을 정한다. 우리는 가족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쓰는 방식을 결정짓는다.²⁸⁾

이미 좋은 것으로 치부된 대상들과의 근접성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하여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향한 정향을 공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외를 경험한다. 아메드는 이들을 ‘정동 이방인’ 혹은 ‘정동 소외자’라 부르며, 흥을 깨는 페미니스트, 불행한 귀여, 우울증적 이주민을 그것의 상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폭력을 노출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불행하다고 읽는 세상에 의해 불행한 주체로 만들어지며, 행복의 조건으로 망각과 침묵을 강요받는다.

아메드에 따르면 하나의 정동을 하나의 대상으로 돌리는 경향은 이미 주어져 있는 ‘연합의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즉 하나의 대상을 한 정동의 원인으로 파악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과 관련한 대상들이 행복의 ‘원인’으로 둔갑하는 인과성의 매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행복의 원인은 행복이 발생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 위에서 ‘원인’으로 소급하여 수행적으로 산출된다. 이 점에서 행복의 대상은 "자기 소급적이며 자기 생산적인 인과성"을 갖는다.(우주현·김순남, 2012) 그러나 행복을 약속하는 대상들에 대한 믿음은 어찌하여 끈질기게 유지되는 것인가?

3. 행복의 조건으로서 ‘잔인한 낙관’: 로렌 벌랜트, 『잔인한 낙관』

『잔인한 낙관』에서 로렌 벌랜트는 ‘좋은 삶에 대한 환상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애착이야말로 위기가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적응하는 정서적 기제라고 분석한다.(Berlant, 2011)

신자유주의적인 현재 우리에게 계층상승, 안정된 직업, 친밀한 관계의 지속, 사회적 평등은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려워질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좋은’ 것이 되며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그 삶에 다가가기 어려운 정도에 비례해서 환상으로 발전된다.²⁹⁾

여기서 실재와 환상 사이의 점점 늘어나는 간극을 봉합하는 것은 근접성의 느낌이다.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하다보면 가까워진다는 느낌 속에서 현재를 견뎌낸다. 낙관주의가 잔인해지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언젠가는 도달할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을 붙드는 애착심은 ‘좋은 삶’을 향해 가고자 노력하는 개인을 마모시키고 삶의 불안정성의 직접적 원인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는 불안정성이 증식하는 상황에선 ‘정상’이 열망해야 할 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28) 아메드, 사라, 『행복한 대상』, p. 72.

29) 박미선(2015), 「로렌 벌랜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여/성이론』, 제33권, p. 99.

20세기에 불만족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정치를 실행하게 한 감정적 연료였다면 이제 그것은 “정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으로 순치된다. 예컨대 실업과 해고가 고용보다 더 빈번하고 만연한 사회에서 일자리가 어떻든 간에 취직상태라는 점을, 그리고 실제 어떤 관계이든 간에 가족이 있다는 점을 여전히 “정상상태”로 규정하며, 이러한 ‘정상’은 이제 열망해야 하는 규범이다. 이것은 친밀한 가족관계도 안정된 직장도, 그것을 열망하는 만큼에 비례하는 정도로, 이미 해체되었음을 뜻한다. 실현되지 않은 약속만을 규범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정상이야 라고 느끼고 싶은” 낙관주의에는 변화를 촉발하는 정치력이 없다. 변화를 촉발하려고 재발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정상상태”가 열망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³⁰⁾

‘행복을 약속하는 대상들에 대한 믿음은 어찌하여 끈질기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행복한 삶이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워질수록 행복에 근접할 가능성은 끈질기게 낙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그 대상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가 실망할 때 약속된 행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감정을 지독하게 부인함으로써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³¹⁾

‘행복해지기 위해선 행복해하라’고 요구하는 잔인한 낙관주의는 행복해하지 않는 존재들을 견딜 수 없어한다. ‘혐오의 정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불편함을 표현하는 행위, 그럼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 자체가 적대시 되는 것이다.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 퀴어 운동, 비거니즘과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 운동, 그 외에 대안적 행복을 상상하는 일련의 실천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 동시에 이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소수자들이 적극적 혐오의 타겟에서 ‘면제’될 것을 약속받는다(이는 어디까지나 약속일뿐이다.) ‘불편함을 토로하지 않는’ 경우, ‘불행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리고 여기서 권력을 질문하는 대신 정상성의 범주로 포섭되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정치학이 가동된다.

4. 나오며

정동의 정치학을 상상하며

‘행복한 삶’이 달성하기 어려운 환상이 된 지금, 환상에 대한 애착을 붙들어두는 것이 정서적 적응 기제가 된 상황에서 정동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 이성을 특권화하는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을 소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하여 권력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기입된 낡은 전제들을 재차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가?

우선 가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러니까 가장 쉬워 보이는 방식부터 기각하고자 한다. 바로 ‘행복한 삶’에 대한 욕망을, 정상성에 대한 욕망을 비웃는 것이다. 로렌 벌랜트의 논의에서 확인했듯, 달성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은 실은 생존에 대한 욕망이다. 벌랜트는 생존에의 욕망에 수치심을 안겨주는 대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것이 원하는 전부인가?’ 『정동 이론』의 서문에서 멜리사 그레그와 그레고리 시그워스는 정동 이론의 약속을 다음과 같

30) 박미선, 「로렌 벌랜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pp. 108~109.

31) 우주현·김순남(2012), 「‘사람’의 행복할 권리와 ‘좀비-동성애자’의 해피엔딩 스토리」, 『한국여성학』, 제28권, 제1호, p. 84.

이 기술한다.

…정동이 세계들, 몸들, 그리고 그 사이들-그 자체의 내재성 속의 정동-에 충돌하며/분출하며 속해 있다는 점은 바로 정동 이론이 약속하는 바이기도 하다. 즉, 몸이 하는 일의 '아직 아님'을 조명하고, 갑자기 출현하는 미래성의 희망적인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극점들을 따라 낚시줄을 드리우며, 무한히 연결될 수 있고 비인격적이며 전염성이 있는 이 세계의 소속물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정동 이론의 약속이다.³²⁾

'좋은 삶'의 모습이란 어떠한 것일지를 더 다양하게 상상하는 것,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 대상과 관계 맺는 새로운, 덜 '잔인한' 낙관주의적 방식을 탐구하는 것, 그리하여 더더욱 욕망하고, 정동하고, 정동되는 것이 혐오의 시대를 통과하는 정동이 그리는 비전일 것이다.

32) 그레그, 멜리사· 시그워스, 그레고시 역. 『정동 이론: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갈무리. p. 21.

5. 참고 문헌

그레그, 벨리사· 시그워스, 그레고시 역. 『정동 이론: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갈무리.

김지영(2016), 「오늘날의 정동 이론」, 『오늘의 문예비평』, pp. 360~373.

박미선(2015), 「로렌 벌렌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여/성이론』, 제33권.

우주현·김순남(2012), 「‘사람’의 행복할 권리와 ‘좀비-동성애자’의 해피엔딩 스토리」, 『한국여성학』, 제28권, 제1호, p. 71~112.

Ahmed, S.(2010), *The promise of happiness*, NC: Duke University Press.

Berlant, L. G.(2011), “Cruel optimism (Vol. 226)”,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끝.

